

#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!  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 
국민의힘 강서구 제2선거구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.
  
-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116호  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 
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  
-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 
서울시에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·단체 또  
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  
으나, 일부 민간위탁사무 중에는 특정 법인 및 단체 등이  
과점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제도상의 문제  
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사  
무의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.  
이는 공공행정서비스를 보완하고 있는 민간위탁 행정서비  
스의 질을 높여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.

-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자격제한 등 민간위탁사무에 관리강화를 통해 수탁기관의 위험이 행정서비스로 전가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  
- 또한,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에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여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.
  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,  
본 의원이 민간위탁사무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려주시고,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